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 
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

**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**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 
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정윤주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3월 28일

발의자 : 강수진, 경수진, 고영옥, 권영애,  
김육영, 박영섭, 소형준, 양순임,  
오중균, 이관우, 이용진, 이호건,  
임태근, 임현주, 정윤주, 정해숙,  
진선아

1. 제안이유

이 조례는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기반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, 제명을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”에서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”로 개정하고,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“생계지원” 및 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” 등을 추가하고,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전세사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안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나. 정의(안 제2조)

다.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(안 제5조)

라.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(안 제6조)

마. 중복지원 제한(안 제7조)

바. 부칙 제2조 유효기간(삭제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

다. 부서협의 : 주택정책과

라. 입법예고 : 2025. 4. 3. ~ 2025. 4. 8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”를 “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데”로, “성북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”을 “성북구민인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수입하게”를 “수익하게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지원사업)”을 “(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)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생계지원: 식료품비·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중복지원 제한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간)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주택임대 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 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정 적인 주거환경 조성</u>과 <u>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</u>을 목적으 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임대차계약”이란 당사자 일 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 을 사용, <u>수입하게</u> 할 것을 약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 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 <p>제5조(<u>지원사업</u>) 구청장은 주택임 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 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는 데 ----- 성북구민인 임차 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</u> 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수익하게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<u>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</u>) -----</p>

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제6조(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)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신설>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7조·제8조 (생략)

부칙
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)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생계지원: 식료품비·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

2. ~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5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중복지원 제한)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·제9조 (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)

부칙

<p>제2조(유효기간) 이 조례는 2025. 5. 31까지 효력을 가진다. 다만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.</p>	<p>제2조(존속기간) ----- 법의 유효기간----- . &lt;후 단 삭제&gt;</p>
---	--